

1. 개정이유

피해구제에서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526호, 2026. 4. 7. 공포, 2026. 10. 8. 시행)됨에 따라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확인절차(안 제2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환경노출조사와 배상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출확인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손해배상금 신청서(안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손해배상금 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을 정함

다. 재심의 신청서(안 제6조, 별지 제4호서식)

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신청서와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라. 계속치료비 지급신청(안 제9조, 별지 제7호서식)

계속치료비를 지급 받으려는 경우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마.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의 지정(안 제11조, 별지 제9호서식)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공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함

바. 계속치료비 지급검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

계속치료비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함

사. 분담금의 공동 분담금액 변경신청(안 제15조)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합의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아. 정보 청구의 절차 및 방법(안 제19조)

정보청구를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사업자는 피해자 증명서 사본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2장 손해배상 등

제3조(손해배상금 신청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1항제4호나목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말한다.

제4조(배상결정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배상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배상결정통지서)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상결정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재심의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동의 및 지급신청)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동의 및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계속치료비 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계속치료비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계속치료비 지급신청 등)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계속치료비를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계속치료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관

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2. 계속치료비를 받은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계속치료비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치료비

- 1)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및 납입확인서
- 2) 진료비·약제비 세부내역서
- 3) 의료기기·의료소모품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 4) 진료일의 진단명이 확인되는 서류(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 5) 혈액검사, 영상자료를 포함한 진료기록부(구제자금운용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해당)

나. 간병비

- 1) 진료기록부
- 2)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원확인서(영유아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3) 전문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계속치료비 이의신청서) 영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계속치료비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

제11조(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병원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된 지정 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사·연구 인력 현황

2. 연구 기자재 및 연구 시설·장비 등의 확보 현황

3. 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조사·연구 실적

4.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5. 보건센터 구성 및 운영계획서

6. 지정기간 중 첫 해의 사업계획서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부터 1개월 전까지 평가 기준 및 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 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보건센터 지정, 관리·감독, 운영실적 평가,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건강모니터링 예외사유서) 영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4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등

제13조(계속치료비 지급검토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급검토전문위원회(이하 “지급검토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급검토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지급검토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급검토전문위원회 위원의 임명, 위촉 및 임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지급검토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 연임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지급검토전문위원회에 계속치료비 지급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검토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제자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의 부과·징수) 법 제30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분담금의 공동 분담금액 변경신청) ①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영 제37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7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공동 분담금액 변경신청서에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한 분담비율이 적힌 합의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공동 분담금액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은 분담금 공동 분담금액의 변경을 인정하면 그 공동 분담금액이 반영된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제16조(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납부고지서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분할납부를 인정하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제17조(분담금 납부 의무 승계 신고 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 승계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국외 이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잔여 분담금(추가분담금) 납부계획서
3. 잔여 분담금(추가분담금)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그밖에 해외 이전관련 서류(폐업 사실증명서, 해외 이주관련 신고서류 등)

제18조(이의신청)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 청구의 절차·방법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정보청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사본

2.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를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 제공·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 사본 및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로 통보받은 것으로 본다.

손해배상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8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	
증빙서류 제출여부	·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제출한 서류로 같음함[] · 별첨과 같이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귀하

신청안내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신청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하려는 자가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급결정은 180일 이내이며,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 및 의학적 판단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문자메시지 동의서

휴대전화번호 문자메시지(SMS) 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동의안함[]

* 수신 동의 시 처리상황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5조1항에 따른 결정서 송달 시 휴대전화번호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검토 심의위원회	→	지급결정 심의위원회	→	동의 및 지급청구 신청인	→	지급의뢰 심의위원회	→	지급 피해관리센터
					↓	신청인에게 통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 서류

신청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526호 부칙 제6조에 해당하는 자(종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제3호가목 및 나목,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1. 신청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등 증빙자료
2.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3. 신청인이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신청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나. 신청인이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 나.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및 의료기기·의료소모품 구입 영수증
 - 2) 진료비·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의료기기·의료소모품 거래내역서
 -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다. 간병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원확인서(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영유아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 2) 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향후 치료비 또는 후유장애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및 후유장애진단서
6.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나. 사망 당시 의무기록
 - 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장제(葬祭)비 영수증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뒤쪽)

배상결정 금액 세부내역		
배 상 금 액 내 역	배 상 내 역	금 액
	1. 치 료 비	원
	2. 간 병 비	원
	3. 장 례 비	원
	4. 휴업배상	원
	5. 장해배상	원
	6. 위 자 료	원
	7. 그 밖의 비용	원
	① 계	원
공 제 금 액	공 제 내 역	금 액
	1. 계속치료비	원
	2. 구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된 구제급여 및 다른 법률에 따 라 지급된 손해배 상 금액 등	원
	② 계 (계속치료비는 신청한 경우에만 공제됨)	
지 급 배 상 금 액	(① - ②)	원

210mm×297mm(백상지 80g/㎡)

문서번호 :

배 상 결 정 통 지 서

[] 신 규
[] 재 심 의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성 명				
주 소				

귀하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별첨 배상결정서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니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배상결정에 동의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30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 1) 동의 및 지급신청서 1부
- 2) 배상결정서 정본 1부
- 3) 신청인이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각 1부

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1) 가목 1) 및 2)에 따른 서류
- 2)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1부
- 4) 피해자 또는 유족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다.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지급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화해·인낙·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정본이나 화해·인낙·조정조서 정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배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배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배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거나,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심의 신청한 경우 재심의 따른 배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배상결정서 정본 1부

년 월 일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직인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	
통지내용			
통지받은 날짜	년 월 일		
재심의 신청 사유	(별지 기재 가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1.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

신청안내

1.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재심의 결정기간은 90일 이내이며,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 및 의학적 판단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검토 심의위원회	➔	재심의 심의위원회	➔	결과 통보 심의위원회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손해배상금 동의 및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
사건번호	배상결정 일자		
배상결정 주문			
배상금지급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정보			
첨부서류	1.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인감증명서(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를 제출합니다)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밖에 사유로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배상결정서正本 4. 화해·인낙·조정조서正本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은 위와 같은 배상결정에 동의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대리)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지급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화해·인낙·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정본이나 화해·인낙·조정조서正本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계속치료비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8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주소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속치료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계속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신청						
본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계속치료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안내						
1. 손해배상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계속치료비를 공제하고 손해배상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지급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검토	→	심의 결정	→	결과 통보
신청인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계속치료비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	
치료비지급 계좌정보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속치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가슴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대리)인

(서명 또는 인)

* 휴대전화번호 문자메시지(SMS) 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동의안함[] (수신 동의 시 처리상황을 휴대전화번호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첨부서류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밖에 사유로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계속치료비를 받은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계속치료비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치료비 1)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및 납입확인서 2) 진료비·약제비 세부내역서 3) 의료기기·의료소모품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4) 진료일의 진단명이 확인되는 서류(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5) 혈액검사, 영상자료를 포함한 진료기록부(지급검토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해당) 나. 간병비 1) 진료기록부 2)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원확인서(영유아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3) 전문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검토 피해관리센터	➔	지급검토 구제자금운용위원회	➔	지급 피해관리센터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계속치료비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 사유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6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속치료비 지급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가슴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 2.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

신청안내

계속치료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슴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에 계속치료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검토 피해관리센터	➔	지급검토 구제자금운용위원회	➔	지급여부 통보 피해관리센터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센터장 (예정자)	성명	소속	
	직위	전자우편 주소	
	전화	팩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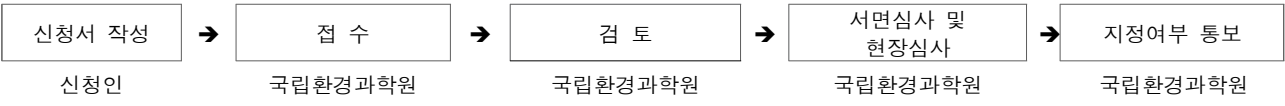
대표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조사·연구 인력 현황
	2. 연구 기자재 및 연구 시설·장비 등의 확보 현황
	3. 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조사·연구 실적
	4.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5. 보건센터 구성 및 운영계획서
	6. 지정기간 중 첫 해의 사업계획서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강모니터링 예외 사유서

진료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단명	

예외 사유(해당되는 사유에 “o” 표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

나. 중증 암환자, 중증 뇌혈관질환자, 중증 심장질환자, 중증 화상환자, 중증 외상환자 등 중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인 경우 ()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건강모니터링 예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가슴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귀하

첨부 서류	예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10mm×297mm(일반용지60g/㎡)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납부고지서

납부번호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분담금 명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	
	원료물질	
	사업자 분담금	
	합계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부과하오니 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유의사항

1. 위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분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공동 분담금액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분담금 공동 분담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납부고지서 내용	분담금액	분담비율 변경 신청인				
		분담금 공동 분담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납부기한					
	납부고지서 도착일					
변경신청 내용	변경 전 분담비율			변경 후 분담비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공동 분담금액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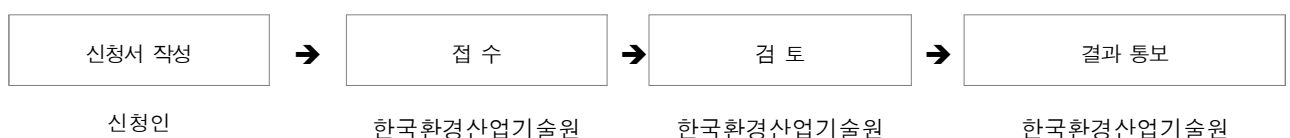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공동 분담하는 사업자 간에 합의한 분담비율이 적힌 합의서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공동 분담금액 변경신청 결과 통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공동 분담금액의 변경신청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공동 분담금액 변경 신청인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분담금을 공동 분담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변경 내용	변경 분담비율			
	변경 분담금액	분담금액 변경 신청인		
		분담금을 공동 분담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변경 납부기한			

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우

도로명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신청 내용	당초 분담금액			당초 납부기한					
	분할납부 기간								
	분할 납부 금액	합계							
		분납일	분납금액	분납일	분납금액	분납일	분납금액		
		1차		5차		9차			
		2차		6차		10차			
		3차		7차		11차			
	4차		8차		12차				
	분할납부 신청사유								
	[] 부과된 분담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과된 분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납부 고지서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검 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결과 통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신청인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분할납부 기간			
		분할납부 횟수			
분할납부 분담금 합계					
신청사유	☐ 부과된 분담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과된 분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 결과	☐ 허용 ☐ 불허용	
	※ 불허용 사유	

분할 납부 내용	분할납부 기간												
	분할 납부 금액	합계											
		분납일		분납금액		분납일		분납금액		분납일		분납금액	
		1차				5차				9차			
		2차				6차				10차			
		3차				7차				11차			
		4차				8차				1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승계인 (신고인)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피승계인 (종전 납부 의무자)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승계사유	☐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법인분할 및 법인분할신설 ☐ 영업양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	승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과 통보
신청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사업장 국외 이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고인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이전하려는 국외 사업장 (국외 본사가 있는 경우 그 본사)	상호 성명(대표자) 주소	사업자 식별번호 전화번호
이전사유	[] 국내사업장 단순 폐업 [] 국외 본사에 합병 [] 기타	
이전예정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장 국외 이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잔여 분담금(추가분담금) 납부계획서 3. 잔여 분담금(추가분담금)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그 밖에 해외 이전관련 서류(폐업 사실증명서, 해외 이주관련 신고서류 등)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검 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결과 통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분담금	분담금 부과금액	
부과명세	납부기한	

이의신청 사유	
---------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청안내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검 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결과 통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증명발급번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확인일자			

위 사람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정보 제공 · 열람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이내
청구인 [] 피해자 [] 사업자	성명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청구대상 정보의 목록				
	제공 방법	[] 제공 [] 열람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청구 이유					
용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 정보의 ([] 제공, []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 ○ ○ ○ 귀하

첨부서류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사본 2.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

수신자 ○○○ (우 , 주소)

청구인	성명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청구대상 정보의 목록			
제공 내용	제공 정보의 목록			
	제공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열람 정보의 목록			
	열람 일시 및 장소			

미제공 목록 및 사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 청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귀하에게 제공한 정보나 귀하가 열람한 정보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피해자	주소(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정보의 제공·열람 신청대상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신청대상 정보의 목록		
신청 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기 정보의 ([] 제공, [] 열람)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 사본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사본(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4.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 사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명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정보의 목록			
결정 내용	정보의 제공·열람 명령 여부			
	명령 대상 정보의 목록			
사유				

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우 도로명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정보 제공·열람 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명령이행 의무자	상호(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명령 이행 결과	정보 수령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정보 제공	제공 정보의 목록		
		제공일		
		수령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정보 열람	열람 정보의 목록		
		열람일		
		열람장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정보 제공·열람 명령 이행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